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개발도상국의 문화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았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